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37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윤준병·이해식·서삼석
주철현·안호영·문금주
허성무·최혁진·이춘석
강준현·이학영·김성범
이정문·김 윤·김의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기술 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이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장 동력을 한순간에 앗아가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행정조치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옴.

또한,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행 사법 체계 하에서는 기술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극도로 어려워 실제 배상액이 미미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함.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 개발 비용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직접적인 손실임에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

이에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7조의3(중전의 제27조의2)제2항 중 “하지”를 “하거나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로 한다.

제27조의2(과징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의2제3항제2호 중 “피해규모”를 “피해규모(수탁기업이 부담한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형사처벌”을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과징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u>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생략)</u>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	<u>제27조의3(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u> ② ----- ----- ----- ----- ----- -----

에 따른 시정명령을 <u>하지</u>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② (생략)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u>피해규모</u> 3. 4. (생략)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u>형사처벌</u>의 정도 5. ~ 7. (생략)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하거나</u>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u>피해규모</u>(수탁기업이 부담한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한다) 3. 4. (현행과 같음) 4의2. -----<u>과징금</u> 또는 <u>형사처벌</u>----- 5. ~ 7.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수탁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으</u>
---	--

② · ③ (생략)	<u>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u> ② · ③ (현행과 같음)
------------	---